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가단50399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홍성필,최단비,김준동

피 고 1. A

2. B

3. C

피고 2, 3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4. D조합

소송대리인 E

변 론 종 결 2021. 1. 14.

판 결 선 고 2021. 1. 28.

주 문

1. 원고에게, 망 F(주민등록번호 1 생략)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7,262,594원 및 그중 6,510,57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각 4,841,730원 및 그중 4,340,385원에 대하여,각 2018. 11. 22.부터 2019. 3.
29.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조합와 망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지분에 관하여 2018. 4. 5.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6,605,77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구상금 청구 및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청구권의 발생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망인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7. 10. 27. 보증원금 15,000,000원, 보증기한 2018. 10. 26.,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망인은 이 신용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망인이 원고의 보증에 의한 주채무인 대출금을 은행에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채권자인 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망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2) 보증채무의 이행

망인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2018. 7. 27. 이자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대출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8. 11. 22. 은행에 금 15,191,346원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3) 법적절차비용

원고는 구상금 채권의 보전비용으로 2019. 2. 1. 현재까지 1,739,758원을 지출하였고, 그 후에도 비용을 지출하여 2020. 11. 12. 현재 총 지출비용은 3,394,508원이다.

4) 보증료 등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정의 보증료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14,950원의 추가보증료를 미납하였다.

5) 지연손해금율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을 기산일로 하는데,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8. 11. 22.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6) 구상금채무의 승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처인 피고 A과 자녀인 피고 B, C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전주지방법원 2018느단875호로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피고

D조합에 대한 청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7,262,594원{(대위변제금

15,191,346원 + 추가보증료 14,950원 + 원고가 구하는 법적절차비용 1,739,758원) × 3/7} 및 그중 6,510,576원(대위변제금 15,191,346원 × 3/7)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4,841,730원{(대위변제금 15,191,346원 + 추가보증료 14,950원 + 법적절차비용 1,739,758원) × 2/7} 및 그중 4,340,385원(대위변제금 15,191,346원 × 2/7)에 대하여, 각 2018.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9. 3.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의 망인에 대한 위 채권(및 증가된 법적절차비용)은 피고 D조합(이하 ‘피고 D’라고 한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망인의 재산처분행위 및 피보전채권의 발생

망인은 H의 피고 D에 대한 기왕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자신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4. 5. 피고 D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다툼없는 사실).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미 구상권 채권 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2018. 7. 27. 이자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망인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실제로 원고가 2018. 11. 22. 망인의 채무를 은행에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망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망인의 무자력

망인은 위 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63,856,55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밖에 2012년식 쏘렌토 차량, 2018년식 트랙스 차량을 소유하였지만 모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2015년식 포터차량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경제적 가치는 무시하여도 될 정도로 미미하다. 반면 소극재산으로 16,946,054원 상당의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비롯하여 I 주식회사에 대한 64,885,816원, J은행에 대한 7,199,300원, K은행에 대한 4,500,000원, L 주식회사에 대한 14,478,000원, M 주식회사에 대한 4,266,950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를 합치면 112,276,120원 상당에 이른다(갑제 8, 10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망인은 위 계약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그리고 피고 D는 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욱 심화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추정된다.

나. 피고 D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 비해당 주장

피고 D는, 망인과 망인의 모인 H가 2017. 6. 28. 피고 D로부터 그들이 지입회사에 지입하였던 차량을 담보로 각 60,000,000원 및 49,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그 후 2018. 4. 11. 차량을 팔아 그 대금으로 망인의 남은 채무 전액 52,166,299원 및 H의 채무 일부인 18,020,416원을 변제하면서, H의 남은 채무액 24,554,517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피담보채무액 만큼) 공동담보가 감소된 이상으로 소극재산인 망인의 채무 52,166,299원이 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변제는 피고 D의 담보물인 차량의 매도대금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소극재산의 감소는 피고 D의 담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이 사건 물상보증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위 감소된 소극재산이 아니라도 벌써

채무초과상태이다. 따라서 망인이 H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그 담보가치만큼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선의 주장

피고 D는 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의 동기와 경위, 내용에 비추어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책임재산의 회복 주장 등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N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임의경매절차가 종결되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2019. 12. 18.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청구금액 전액인 15,000,000원이 배당되고, 근저당권자인 피고 D에게 15,662,634원이 배당되는 등 배당절차 참가 채권자 모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잉여금 8,779,883원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 A, B, C에게 배당되었다. 그런데 앞서 본 망인에 대한 채권자들 중 J은행, K은행,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는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않았다(다툼 없는 사실, 을제8-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D는, 위 배당절차에서 잉여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망인을 상속한 채무자들은 자력을 회복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 위 배당절차에 모든 채권자들이 참가하여 배당을 받았음에도 잉여금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잉여금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채무자들이 자력을 회복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잉여금의 액수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은 채권자들의 앞서 본 채권액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채무자들은 여전히 채무초과 상태이다.

다) 피고 D는,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채권액 일부에 대하여만 권리를 행사하여 배당받았는바, 만약 남은 채권액에 대하여도 권리를 행사하였더라면 그 돈에 대하여도 배당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고서 피고 D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D를 해할 목적으로 악의로 채권액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받은 채 그 나머지 채권액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D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권리 행사의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채권자취소의 범위

-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로 피고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 2) 한편,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 D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다음, 그 소로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하겠다면서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외에 원상회복을 별도로 명하지 않는다.
- 3) 나아가 피고 D의 배상가액을 보건대,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20. 11. 12. 현재 원고의 채권은 21,605,777원(대위변제금 15,191,346원 + 추가보증료 14,950원 + 법적절차비용 3,394,508원 + 지연손해금 3,004,973원)이고(갑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여기서 원고가 배당받은 15,000,000원을 빼면 원고의 채권액은 6,605,777원이 남는다.
- 4) 그렇다면 피고 D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6,605,77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홍도

<별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P
벽돌조 콘크리트 슬래브시멘기와지붕 단층 주택
84.20㎡
지하실 11.60㎡

F 지분 2분의 1

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 대 181㎡

F 지분 2분의 1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8. 4. 5. 접수 제39743호 근저당권설
정등기